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란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의 의견이 상이하여, 실증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의견청취 결과”를 “의견청취 결과(다만, 법 제74조의2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규제자유특구의 크기·위치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도와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제43조제1항 중 “공보 또는 신문”을 “공보, 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나 신문”

을 “공보, 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45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다만, 해당 시·도가 이전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던 경우로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40명”을 “4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산림청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산림청·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심위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8항제3호 중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을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연장하는 경우에는”을 “연장하거나 이 영 제59조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실증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한다.

5. 실증특례 연장기간 동안 실증특례 대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내용·방법·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제59조제3항제3호 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7항”을 “법 제87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2. 해당 신제품·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의 편익 정도
3. 해당 신제품·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그 밖에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 및 정비방향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법 제87조제6항 및 이 영 제59조제6항에 따라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서를 통지해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 8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⑨ 법 제87조제9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 관하여는 제 10항을 준용한다.

1.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87조 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제60조제1항 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을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으로, “법 제86조제6항 및”을 “법 제86조제6항, 제87조제10항 및”으로, “책임보험을”을 “책임보험등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금액”을 “보험금 또는 공제의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보험금액”을 “지급보험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금”을 “보험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책임보험”을 각각 “책임보험등”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책임보험”을 각각 “책임보험등”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7조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 영 제59조제7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또는 법 제8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의 만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등의 검증자  
료(다만, 안전성 등이 이미 검증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장 진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화 계획

제64조제8항 중 “임시허가 를”을 “임시허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  
3호 중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을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같  
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시허가 연장 기간 동안 임시허가 대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내용·방법·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별표 제1호나목 중 “(가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제2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별표 제2호 위반행위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가.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제8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3조제1항제1호 |  |
|--------------------------------------------------------------------------------|---------------|--|

별표 제2호에 가목1)부터 가목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350  |
|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700  |
| 3)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1000 |

별표 제2호나목 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법 제143조제1항제2호 |
|---------------|

별표 제2호에 나목1)부터 나목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 후 1개월 내에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        |  | 300  |
| 2)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       |  | 500  |
|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 후 3개월부터 6개월 이내에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 |  | 700  |
|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후 책임보험                                  |  | 1000 |

|                                                                    |  |  |
|--------------------------------------------------------------------|--|--|
| 등에 가입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 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
|--------------------------------------------------------------------|--|--|

별표 제2호 위반행위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법 제143조제1항제<br>3호 |
|-------------------|

별표 제2호에 다목1)부터 다목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1) 1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350  |
| 2) 2차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700  |
| 3) 3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1000 |

별표 제2호라목 중 “책임보험”을 “책임보험등”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법 제143조제1항제<br>4호 |
|-------------------|

별표 제2호에 라목1)부터 라목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 후 1개월 내에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  |  | 300 |
| 2)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 |  | 500 |
|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                                              |  | 700 |

|                                                                                                                |      |  |
|----------------------------------------------------------------------------------------------------------------|------|--|
| <p>행 후 3개월부터 6개월 이내에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p>                                                     |      |  |
| <p>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후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한 경우 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는 경우</p> | 1000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야 한다.

1. · 2. (생략)

3.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주민,  
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  
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8. (생략)

9.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  
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  
형도면 또는 지적도

10. (생략)

④ (생략)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①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의견청취 결  
과(다만, 법 제74조의2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8. (현행과 같음)

9. 규제자유특구의 크기·위치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도  
와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① -----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도의 공보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생략)

③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비수도권 시·도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 4. (생략)

제45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  
-----  
----- 공보, 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공보,  
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

1. ~ 4. (현행과 같음)

제45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 -----  
-----  
-----  
-----  
-----

고려해야 한다.

1. ~ 9. (생략)

<신설>

10. (생략)

제4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말한다.

② ~ ⑨ (생략)

제4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

-----.

1. ~ 9. (현행과 같음)

10.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다만, 해당 시·도가 이전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던 경우로 한정한다)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4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4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  
-----  
----- 45명 -----  
-----.

② -----  
-----  
-----  
-----

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기업부 · 국무조정실 · 산림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장

## 2. (생략)

③・④ (생략)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_\_\_\_\_

\_\_\_\_\_

1. -----  
-----  
-----  
-----  
-----  
-----  
  
-----산림청  
· 국무조정실 · 공정거래위원회  
회 ·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회

⑥ ~ ⑩ (생략)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8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2. (생략)

3.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4. (생략)

<신설>

5. (생략)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 -----

4. (현행과 같음)

5. 실증특례 연장기간 동안 실증특례 대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내용·방법·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⑨ -----  
-----  
----- 연장하거나 이 영 제59조제9항에 따라 법령정비 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⑩ (생략)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①·

② (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와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의 내용

④ (생략)

<신설>

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실증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

⑩ (현행과 같음)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책임보험등 -----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신 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2. 해당 신제품·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의 편익  
정도

3. 해당 신제품·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  
대효과

4. 그 밖에 법령 정비의 필요 여  
부 및 정비방향 검토에 필요  
한 사항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  
87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  
원회(「행정규제기본법」 제23  
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를 말  
한다. 이하 같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규제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  
른 개선 권고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법 제8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에게 관련 혁신산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실증사업자는 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⑩ ----- 법 제87조제11항-----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사가 법 제87조제6항 및 이 영 제59조제6항에 따라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서를 통지해야 한다.

⑪ -----  
-----  
----- 제9항  
및 제10항-----  
-----  
-----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실증사업자에게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⑨ 법 제87조제9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중

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 관하여는 제10항을 준용한다.

1.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사가 제출을 요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① 실증특례 및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2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86조제6항 및 제90조제8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증서 사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

## 구하는 자료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① ----  
-----  
-----  
-----  
----- 책  
임보험등-----  
-----  
-----  
-----  
-----  
-----.

② ----- 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 -----  
-----  
----- 법 제86조제6항,  
제87조제10항 및 -----  
-----  
-- 책임보험등을 -----.

----- 책임보험등  
의 -----  
-----  
-----.

③ -----

은 자가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2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 4. (생략)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 3. (생략)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제90조제1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61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  
-----  
----- 보험금 또는 공제  
의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  
-----  
지급보험금등-----  
-----.

1. ~ 4. (현행과 같음)

④ -----  
-----  
-----  
-----  
-----  
-----  
보험금등-----.

1. ~ 3. (현행과 같음)

⑤ -----  
-----  
-----  
-----  
----- 책임  
보험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

⑥ -----  
----- 책임보험등-----  
-----.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2항 단서 및 제90조제1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 와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생략)

② (생략)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2항의 책임보험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① -----

----- 책임보험등-----

-----

-----

-----

-----

-----

-----

-----

-----

-----.

1. 책임보험등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① ---

-----

-- 책임보험등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책임보험등-----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1조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  
-----  
--.

③ -----  
----- 책임보험등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  
-----  
-----  
-----  
-----  
----. 다만, 법 제87조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 영 제59조제7항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또는 법 제8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만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

1. · 2. (생략)

<신설>

3. · 4.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4. · 5. (생략)

③ ~ ⑦ (생략)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는 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하는 임시허가 신청서를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등의 검증자료(다만, 안전성 등이 이미 검증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3. 시장 진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화 계획

4.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임시허가를 -----  
-----

|                                                                                                                                                                                                                                                                                                                                            |                                                                                                                                                                                                                                                                                                                               |
|--------------------------------------------------------------------------------------------------------------------------------------------------------------------------------------------------------------------------------------------------------------------------------------------------------------------------------------------|-------------------------------------------------------------------------------------------------------------------------------------------------------------------------------------------------------------------------------------------------------------------------------------------------------------------------------|
| <p>야 한다.</p> <p>⑨ 법 제90조제8항 단서에 따라<br/>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br/>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br/>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br/>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br/>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br/>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br/>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p> <p>1. 2. (생 략)</p> <p>3. <u>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u><br/>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p> <p>4. (생 략)</p> <p><u>&lt;신 설&gt;</u></p> <p>5. (생 략)</p> <p>⑩ ~ ⑫ (생 략)</p> | <p>-----.</p> <p>⑨ -----<br/>-----<br/>-----<br/>-----<br/>-----<br/>-----<br/>-----.</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책임보험등의 유효기간</u> ----<br/>-----</p> <p>4. (현행과 같음)</p> <p>5. <u>임시허가 연장 기간 동안 임<br/>시허가 대상 혁신사업 또는<br/>전략산업 등의 시행내용·방<br/>법·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br/>획서</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⑩ ~ ⑫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br>기획총괄과 |                  |
| 연 락 처                      | (044) 865 - 9655 |